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변경 사항

<정정표>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설명서 전 반	템플턴 BRIC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템플턴 BRIC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템플턴 BRIC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 템플턴 BRIC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
제2 부. 2. 집합 투자기구의 연혁	<u>정정전1) 참조</u>	<u>정정후1) 참조</u>
제2부. 4. 집합 투자업자	<u>정정전2) 참조</u>	(삭제)
제2부. 5. 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u>정정전3) 참조</u>	<u>정정후3) 참조</u>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제2부. 13. 나. 집합 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수탁회사 보수 : 연 0.05%</u>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연 0.03%</u>	<u>수탁회사 보수 : 연 0.03%</u> <u>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연 0.015%</u>
제2부. 6.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u>정정전4) 참조</u>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u>정정후4) 참조</u>
제2부. 7. 집합 투자기구의 투	이 투자신탁은 BRIC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템플턴 BRIC 증권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

<p>자목적</p>	<p>모투자신탁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 6호가목에 의거하여 SICAV FTIF Templeton BRIC Fund 에 주로 투자하는 『템플턴 BRIC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Templeton BRIC Fund 는 일반투자자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주로 (i)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홍콩 및 대만 포함)(“BRIC”)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동 국가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ii) BRIC 경제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거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BRIC 경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제2부. 8. 가. 투자 대상</p>	<p>[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정정전5) 참조</p>	<p>[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정정후5) 참조</p>
<p>제2부. 8. 나. 투자 제한</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정정전6) 참조</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정정후6) 참조</p>
<p>제2부. 9.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p>	<p>정정전7) 참조 (...) 또한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 증권에 주로 투자되므로 모투자신탁의 수익은 관련통화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의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p>	<p>정정후7) 참조 (...) 또한 모투자신탁은 미국달러로 표시되는 FTIF Templeton BRIC Fund에 주로 투자되므로 모투자신탁의 수익은 관련통화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p>

	<p>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 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제2부. 9. 나. 위험관리	<p>미국달러화로 표시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목표헤지비율:100%추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한편, 모투자신탁이 미달러 이외에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분산투자하므로(위 9.가. 의 그림 참조), 개별투자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p> <p>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p> <p>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미국달러화로 표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목표헤지비율:100%추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삭제)</p> <p>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신설)</p>	<p>정정후8) 참조</p>

정정전1)

일 자	내 용
2008년 8월 27일	최초설정
2009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템플턴 BRIC 주식형 자투자신탁 →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정정후1)

일 자	내 용
2008년 8월 27일	최초설정
2009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템플턴 BRIC 주식형 자투자신탁 →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010년 5월	<u>모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변경에 따라 따라 펀드명칭 변경</u> :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정정전2)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위탁운용사 및 내용

펀드명	템플턴 BRIC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회사명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주소 및 연락처	7 Temasek Boulevard, #38-03 Suntec Tower One, Singapore 전화번호: 65 6338 7177
회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싱가포르에 리서치 사무소 개설 - 1992년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설립; 싱가포르재정감독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투자운용사로 등록 - 싱가포르 증권 및 선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펀드운용 라이선스 보유 - 미국 증권감독원 (U.S.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등록 및 홍콩증권선물규제위원회(Hong Kong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의 투자운용 라이선스 (Type 9 License in Asset Management) 보유

정정후2)

(삭제)

정정전3)

나.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2009.12.31.현재)

펀드 매니저	Mark Mobius
운용 자산규모	약 US\$341억
과거 운용경력	-템플턴 이머징 마켓 펀드, 템플턴 아시안 그로스 펀드, 템플턴 차이나

펀드 등 운용경력 30년 이상
 -20세기 10대 펀드매니저 선정(1999년 칼슨 컨설팅 그룹)
 -1997,1998년 2년 연속 세계 최우수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매니저 선정(로이터 서베이)

※ 상기인이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정정후3)

나. FTIF Templeton BRIC Fund 책임운용인력

펀드명	성명	나이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 구 (2010년03월31일 기준)		책임운용 전문인력 여부
					펀드수	규모	
템플턴 브릭 펀드	Mark Mobius	73	임원, 회장	- 이머징마켓에 30년간의 경력 - 1987년: Templeton Emerging Markets Fund, Inc.에 사장으로 입사	40	\$34,127.0	Y
	Dennis Lim	51	공동 최고경영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 1995년: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의 이사로 선임	N/A	N/A	Y
	Tom Wu	49	디렉터, 포트폴리오 매니저	- 1986: Vickers da Costa Hong Kong Ltd.,에서 투자애널리스트로 근무	N/A	N/A	Y

※ 상기인이 FTIF Templeton BRIC Fund의 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정정전4)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템플턴 BRIC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BRIC 주식 등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p>-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BRIC 주식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p> <p>BRIC 주식 이란,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을 통칭하여“BRIC” 이라 합니다) 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해당 지역에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기업, 또는 2) 주요 수익 내지 자산이 BRIC 에서 발생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중 상장·등록 또는 상장예정·등록 예정인 것 을 의미합니다.</p> <p>- 투자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을 통해 Bottom-Up Approach로 구성되며, 인위적인 국가별 자산배분은 하지 않음.</p> <p>-외화표시자산에의 투자 부분은 이머징 마켓 투자에 정통한 프랭클린템플턴 그룹의 자회사인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가 운용업무위탁을 받아 운용.</p> <p>-벤치마크: 100% MSCI BRIC Index</p>

정정후4)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	-------------

템플턴 BRIC 증권 모투자신 탁 (주식-재간 접형)	주요투자대상	FTIF 템플턴 브릭 펀드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p>-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서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BRIC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인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Funds의 하위펀드 Templeton BRIC fund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p> <p>BRIC 주식이란,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홍콩 및 대만 포함)("BRIC")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동 국가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2) BRIC 경제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거나, 자산의 상당 부분이 BRIC 경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증권 등을 의미합니다.</p> <p>- 투자 투자목적은 보다 융통성 있는 투자방침을 통해서 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empleton BRIC fund 는 채무증권, 고정수익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양도성증권을 대상으로 투자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음.</p> <p>- 벤치마크: 100% MSCI BRIC Index</p>

정정전5)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일반주식	40% 이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이하 "국내주식") 또는 국내 및 외국법인 등이 외국통화로 발행한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아래 제2호를 제외한 것(이하 "해외주식")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통칭하여 "일반 주식"이라 한다.)
2. BRIC 주식	60% 이상 (단, BRIC주식에의 투자는 BRIC 국가 별로-중국의 경우, 홍콩과 대만을 합산-각각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 이상)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국을 통칭하여 "BRIC"이라 한다) 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해당 지역에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기업, 또는 2) 주요 수익 내지 자산이 BRIC 에서 발생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위 제1호의 일반 주식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이하 "BRIC 주식"이라 한다.)

정정후5)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단, BRIC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40% 이하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합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	40% 이하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정정전6)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	---------	----

<p>동일종목 투자</p>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p>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지당증권으로서 주택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지당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p>	<p>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p>이해관계인</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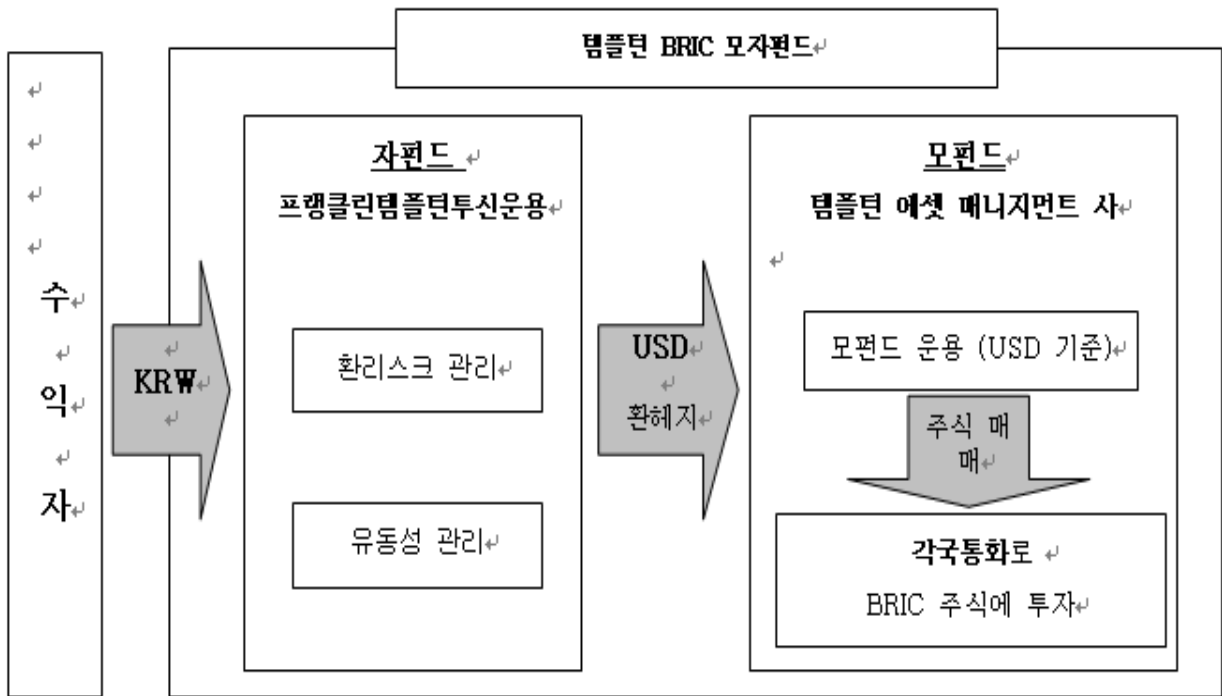
정정후6)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p>동일종목 투자</p>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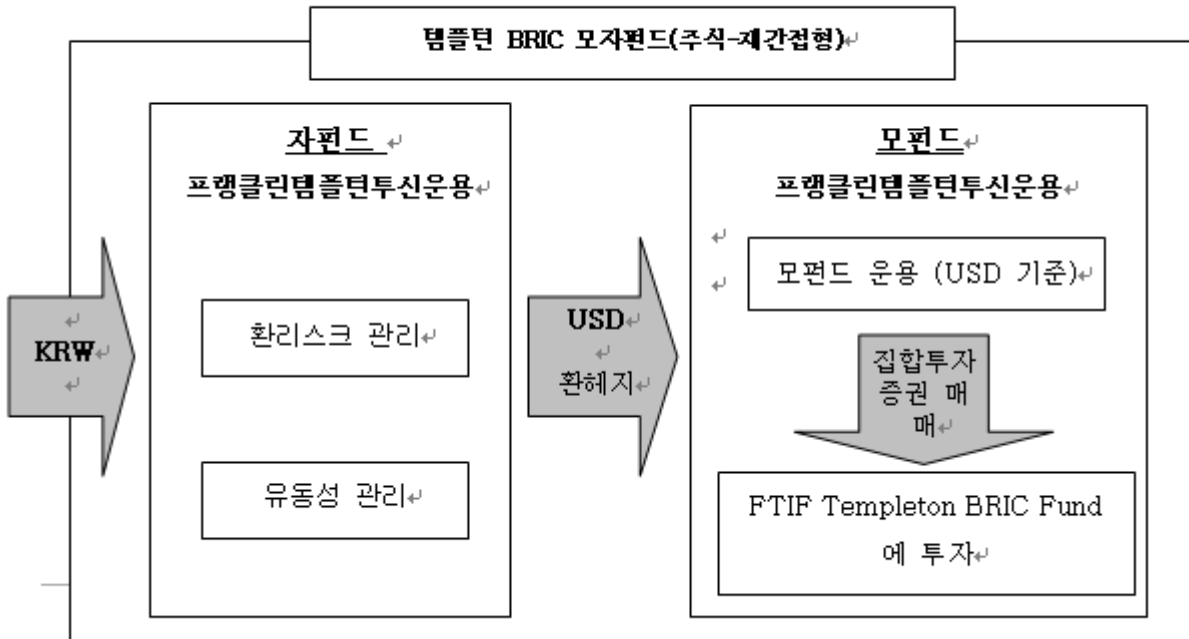
	<p>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p>월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p>	<p>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 4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간</p>
<p>이해관계인</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p>계열회사 증권의 취득</p>	<p>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각1호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p>	<p>○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및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p> <p>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채산을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채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 4호의 주된 투자대상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간</p>

	<p>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의 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	--

정정전7)4



정정후 7)



정정전 8)

(신설)

정정후 8)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사무수탁	기타 (신탁보수포함)	총보수비용	선취판매수수료
FTIF Templeton BRIC Fund X share	0.00%	0.00%	0.20%	0.10%	0.30%	0.00%
템플턴 BRIC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0.90%	1.20%	0.015%	0.03%	2.145%	1.00%
총보수·비용	0.90%	1.20%	0.215%	0.13%	2.445%	1.00%

3. 효력 발생일

2010년 5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